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978년 11월 21일
제 12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978년 11월 21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20차 유네스코 총회는,

유엔 헌장에서 제 국민들은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위엄, 가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사회진보와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는 결의를 확인하였음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협약에 의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또는 다른 고려사항에 대한 차별 없이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인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 요건들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기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기회는 모든 인간을 위해 보장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인간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국제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확신하고*,

체육 및 스포츠가 전인 개발의 근본이 되는 근본 인간 가치의 터득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체육과 스포츠가 국민들간 및 개인간의 친선을 증진하고, 이와 함께, 사심 없는 경쟁, 연대와 형제애, 상호존중과 이해, 그리고 인간의 숭고함 및 위엄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해야함을 *강조하고*,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자유롭고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줄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계주어져 있음을 *고려하면서*,

체육 및 스포츠를 자연환경에 통합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의 수준을 높이고, 지구의 자원에 대한 존중 및 자원을 보전하고 인류 전체의 더욱 숭고한 선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관심을 고취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훈련 및 교육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그러나 각 나라의 스포츠체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육 및 스포츠는 신체적 안녕과 보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하고 균형된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데 *주목하며*,

더 나아가,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체육 및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제 국민간의 평화와 친선을 위해 체육 및 스포츠를 담당하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이 인류 진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증진하고, 정부, 비정부기구, 교육자들, 가정, 개인들에게 이 헌장을 길잡이로 삼고 이를 펴뜨리고 실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국제 헌장을 공포한다.

제 1조. 체육 및 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이를 위한 기본권이다

1.1. 모든 사람은 체육 및 스포츠에의 참여라는 기본권을 가지며, 이는 그 인격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체육 및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기르는 자유는 교육 체제 내에서와 다른 사회생활 영역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은 국가적 스포츠 전통에 따라 체육 및 스포츠를 행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재능에 적합한 스포츠의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한다.

1.3. 취학 전 연령의 아동들을 비롯하여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격의 완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2조. 체육 및 스포츠는 전반적인 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2.1. 교육과 문화의 필수적인 차원으로서 체육 및 스포츠는 완전히 통합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능력, 의지력, 자기 규율을 개발해야 한다. 신체 활동과 스포츠 향유의 지속성은 세계교육, 평생교육, 민주교육을 통해 평생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2.2.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육 및 스포츠는 건강의 유지와 개선에 기여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며 인간이 현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육 및 스포츠는 사회적 관계들을 풍요롭게 하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정정당당한 경쟁을 발전시킨다.

2.3. 모든 전반적인 교육체제는 신체 활동과 다른 교육 구성요소간의 균형을 세우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과 스포츠에 필수적인 지위와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 3조.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은 개인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3.1.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기후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개인 특성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회내의 장애인 집단들의 요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3.2. 일반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은 내용과 일정 모두의 장점을 살려 인간다운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습관과 행동양식을 창출하도록 도와야 한다.

3.3. 심지어 구경거리로서의 특성을 가질 때라도, 경쟁 스포츠는 올림픽의 이상에 따라 교육적 스포츠의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비유를 대표한다. 결코 이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4조.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체육 및 스포츠의 교수, 지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4.1. 체육 및 스포츠를 직업적으로 담당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이들이어야 한다. 충분한 수를 신중히 선발해야 하며, 이들이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계속 훈련 및 예비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2. 적절한 훈련과 지도를 받았다면, '자원인사'들은 종합적인 스포츠 발전에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실행과 조직에 대중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4.3. 체육 및 스포츠 종사자들의 훈련을 위해 적절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종사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의무에 걸맞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

제 5조. 적절한 시설과 장비가 체육 및 스포츠에 필수적이다

5.1.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학교내외의 프로그램에 강도 높고 집중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설치해야 한다.

5.2. 체육 및 스포츠 공간, 시설, 장비를 제공하고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힘을 합하고 공동으로 계획하는 것이 정부, 공공기관, 학교, 적합한 시설 기관들의 책임이다.

5.3. 필수적인 것은, 농촌 및 도시 발전계획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하여 체육 및 스포츠 공간, 시설, 설비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요구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제 6조. 연구 및 평가는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6.1. 체육 및 스포츠의 연구와 평가는 모든 형태의 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훈련방법과 조직 및 관리절차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체제는 더 나은 교육방법과 수행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6.2. 이 영역에서의 사회적 함의가 간과될 수 없는 과학적 연구는, 그 연구가 체육 및 스포츠에 부적절하게 응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제 7조. 정보 및 문서화는 체육 및 스포츠의 증진을 돕는다

7.1.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정보와 문헌의 수집, 제공, 배포는 주요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프로그램, 실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제 8조. 대중매체는 체육 및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한다.

8.1. 정보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매체 관계하는 모든 이들은 체육 및 스포츠에 구현된 사회의 중요성, 인본주의적 취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완전히 자각해야 한다.

8.2. 체육 및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관계자들과 체육 및 스포츠 전문가들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고 상호 신뢰감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대중매체 종사자의 훈련은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 9조. 국가 기관들이 체육 및 스포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9.1. 모든 수준의 공공 기관 및 전문화된 비정부기구들이 교육적 가치가 가장 명백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관들의 조치는 법령 및 규정을 집행하고,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장려, 고무, 통제와 같은 모든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는 데 있다. 공공 기관들은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장려할 수 있는 재정적 조치들의 채택을 보장할 것이다.

9.2. 의무적인 체육 활동과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사이에 지속성과 조정을 허용하려면, 평생교육의 기본 틀에서 일관되고, 포괄적이지자 분산된 행동계획을 장려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의 책임이다.

제 10조. 세계적이고 균형잡힌 체육 및 스포츠증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10.1. 각 회원국 및 관심 있는 나라가 대표되고, 체육 및 스포츠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지역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현저히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0.2. 이 분야의 내생적 발전을 증진하고 고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동기를 통해 국제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10.3. 세계 언어라 할 수 있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이익의 추구를 통해, 제 국민들은 항구적인 평화, 상호존중, 친선의 보존에 공헌하고 그럼으로써 국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상서로운 풍토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모든 국가 기구 및 제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간의, 각 기구의 전문영역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 긴밀한 공조는 만드시 전 세계에 걸친 체육 및 스포츠 발전을 증진할 것이다.